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김 건 · 이소희 · 김태호

김기웅 · 안철수 · 김태규

최보운 · 박충권 · 윤재옥

이성권 · 강선영 · 김석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,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·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분야별 전담대사) ① 외교부장관은 경제·과학기술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지식 및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대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대사의 종류,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분야별 전담대사) ① 외 교부장관은 경제·과학기술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지식 및 외 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분 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게 하 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대사를 둘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대사의 종류,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